

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(미신청자 공고)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8조(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)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「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(미신청자 접수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10. 10.

정 읍 시 장

□ 접수기간 : 2024. 10. 15.(화) ~ 10. 31.(목)

□ 지원대상 : 전년도(2023년) 연매출액 **3억원 이하** 관내 소상공인***※가짜급자제외**

*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※ 전년도(2023년) 및 당해 연도(2024년)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(폐업,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)

○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

○ 제외업종 : 유흥·단란 등 향락업종,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*, 택시 사업자,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(카드수수료가 해당사업장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)

*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·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

□ 지원내용 :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 (최대 50만원)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'24. 10. 15.(화) ~ 10. 31.(목)
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읍.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- 신청서류
 1. 지원신청서 1부
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

□ 지급기간 :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

□ 관련문의 :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(☎539-5613)
및 관내 읍.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
서식1

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

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

업 체 명			대 표 자		
사업자등록번호			업 종	(사업자등록증 상 업종)	
업 체 현 황	T E L			F A X	
	주 소				
	영업개시일	년	월	일	현)상시근로자 명
대표자 정보	성 명			생년월일	
	핸드폰			E-mail	
신 청 인 제출서류	①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 번호 포함) 1부.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,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			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(입금계좌 확인정보) 제공 동의서

1.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 *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.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 정보(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)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(은행명: 계좌번호: 예금주:)

2024 . .

신청인(사업주)

(서명 또는 인)

정읍시장 귀하

서식2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
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개인정보 제공 목적	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	보유·이용 기간
- 정읍시 소상공인의 통계 자료 등 수집	<u>성명, 생년월일, 휴대폰 번호,</u> <u>이메일, 주소, 업력, 매출,</u> <u>사업자등록증 정보,</u> <u>부가가치세증명내역, 면세사업자</u> <u>수입금액증명 내역,</u> <u>사업장상태(휴폐업일자),</u> <u>신용카드매입·매출, 통장계좌 등</u>	5년

*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,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,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.

※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

미동의

2.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
제공받는 자	개인정보 이용 목적	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	보유·이용 기간
<u>정읍시 및</u> <u>정읍세무서</u>	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정책홍보 등 지원	<u>성명, 생년월일, 휴대폰 번호,</u> <u>이메일, 주소, 업력, 매출,</u> <u>사업자등록증 정보</u> <u>부가가치세증명내역,</u> <u>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,</u> <u>사업장상태(휴폐업일자),</u> <u>신용카드매입·매출,</u> <u>통장계좌등</u>	5년

*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,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※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안내 지연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동의

미동의

2024년 월 일

업체명 : _____

성명 : _____ (서명/인)

정읍시장 귀하

제외업종

(재)보증 제한업종 [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]

○ 보증 제한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561 중	• (삭제 2010.11.30)
5621	• (삭제 2010.11.30)
56211	• 일반유흥 주점업 (신설 2010.11.30)
56212	• 무도유흥 주점업 (신설 2010.11.30)
68	• 부동산업. 다만,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(개정 2010.11.30)
91121	• 골프장 운영업
91291	• 무도장 운영업
91249	•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612 중	•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46102 중	• 담배중개업(2009.1.1)
46107 중	• 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 (개정 2004.11.11)
46209 중	• 앞담배 도매업
46331	• 주류 도매업. 단, 주류중개업면허(나)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(단서신설 2010.8.31)(개정 2018.8.21)
46333	• 담배 도매업
46416 및 46417 중	• 모피제품 도매업.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(단서신설 2005.7.4)
64	• 금융업
65	• 보험 및 연금업
66	•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.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제외
75993	•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(신설 2009.1.1)
	•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(신설 2009.1.1)
	•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(신설 2010.11.30)

○ 재보증 제한업종

구분	한국표준산업분류	세부업종
도박 및 게임 관련	•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(33409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	• 장난감 및 취미, 오락용품 도매업(46463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	• 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(47640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	•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(47911)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(47912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
	•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76390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	•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) 중	•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•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(63999) 중	•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	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(75999) 중	•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건전 문화 관련	•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(58122) 중	•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	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(91113)	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•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(96992)	• 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(47859) 중	• 성인용품 판매점
투기 조장	•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(75330) 중	• 흥신소
	• 오락장 운영업(9122) 중	•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•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(96999) 중	•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투기 조장	• 경영 컨설팅업(71531) 중	• 기획부동산업 ^{주)}

주) (운영형태)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(330㎡, 660㎡ 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-5배)에 매도하는 업체

제외업종

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